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대 기 환 경 보 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 주변 환경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9항이 신설('21.4.13 공포, '21.10.14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비산배출시설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 부과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는 한편, 냉매회수업 등록 기준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조건 부여기준 구체화(안 제11조제7항 신설)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시 비산 배출, 악취 및 소음 등 인근지역 환경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나. 비산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과징금 부과 기준 설정(안 제38조제4항 신설)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적용하되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으로 구

분되지 않는 그 외 사업장은 최소 부과계수가 적용되도록 함

다.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의 위탁 근거 마련 및 냉매회수업의 보관시설의 보유 기준 완화(안 제66조제9호의5 및 제9호의6 신설, 별표14의2 비고 제3호 신설)

-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환경공단에 위탁한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대상자 통보 및 교육 전문기관 지정시 현장점검·평가 등 업무에 대한 근거 마련
- 냉매회수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보관시설, 운반차량을 임차하는 경우도 보관시설 보유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개선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출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변 환경 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비산배출(배출구가 아닌 곳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악취 및 소음 등 인근지역의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3항 및 제4항에”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또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운영자의

사업장이 영 별표 1의3에 따라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과계수를 0.4로 한다.

제66조제1항제9호의5 및 제9호의6을 각각 제9호의7 및 제9호의8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5 및 제9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5. 제76조의12제3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 관리

9의6. 제76조의12제5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관련 서류 검토, 현장 점검 및 평가

별표 14의2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운반차량 또는 보관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운반차량 또는 보관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15 제2호하목 중 “법 제44조제10항”을 “법 제44조제1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u>배출시설</u>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u>아니하는</u> 배출시설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5종 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p> <p>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u>하여야</u> 한다.</p> <p>③ ~ ⑥ (생 략)</p> <p><u><신 설></u></p>	<p>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① ----- ----- <u>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u>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 <u>않는</u> ----- -----.</p> <p>② ----- ----- ----- <u>해야</u> -----.</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⑦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변 환경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제38조(과징금 부과대상 등) ①~

② (생략)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84조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300만원과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1. 1종사업장: 2.0
2. 2종사업장: 1.5
3. 3종사업장: 1.0
4. 4종사업장: 0.7
5. 5종사업장: 0.4

<신 설>

1. 비산배출(배출구가 아닌 곳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악취 및 소음 등 인근지역의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8조(과징금 부과대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또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운영자의 사업장이 영 별표 1의3에 따라 분류되지 않

④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66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 9의4. (생략)

<신설>

<신설>

9의5. · 9의6. (생략)

10. (생략)

② ~ ⑤ (생략)

는 경우에는 부과계수를 0.4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66조(업무의 위탁) ① -----

-----.

1. ~ 9의4. (현행과 같음)

9의5. 제76조의12제3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 관리

9의6. 제76조의12제5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관련 서류 검토, 현장 점검 및 평가

9의7. · 9의8. (현행 제9호의5 및 제9호의6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대기관리과	
연 락 처	(044) 201 - 6914